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13.공포, 2024. 8.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제17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9조, 별표 2 등)
- 나.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제4항)
- 다. 조문 상 오기를 바로잡음(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채용후보자”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로,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정”을 “경정, 경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순경”을 “경위 및 순경”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각각 “채용시험”으로 한다.

별표 1의 항공란 중 “조정”을 “조종”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		23세 이상 40세 이하(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총경·경정	경감·경위	경사·경장 · 순경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경과별 분야별 시험별			일반						항공		정보통신	
			일반(보안)		세무·회계		사이버		항공		전산·정보통신	
경정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 3 차	필수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영어	-					영어	-	영어	-
			민법 개론	100점					행정법	100점	전기 통론	100점
	제 4 차	필수	행정법	100점					항공 법규	100점		
			형법	100점					비행 이론	100점	행정법	100점
			형사 소송법	100점					관계 이론	100점	형법	100점
		선택 (1개)	범죄학	100점							형사 소송법	100점
			국제법	100점					항공 역학	100점	전자 공학	100점
			민사 소송법	100점					기관학	100점	통신 이론	100점
경위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 3 차	필수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영어	-	영어	-	영어	-				
			헌법	120점	형사법	120점	형사법	120점				
			형사법	60점	헌법	60점	헌법	60점				
			경찰학	120점	세법	80점	정보 보호론	80점				
			범죄학	60점	회계학	80점	시스 템· 네트 워크 보안	80점				
	선택 (1개)		행정법	40점	상법 총칙	60점	데이터 베이스론	60점				
			행정학	40점	경제학	60점	통신 이론	60점				
			민법 총칙	40점	통계학	60점	소프 트 웨어 공학	60점				
					재정학	60점						
순경 공개 경쟁	제 3 차	필수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영어	-							영어	-

채용 시험		헌법	50점					항공 영어	100점	컴퓨터 일반	100점
		형사법	100점					항공 법규	100점		
		경찰학	100점					비행 이론	100점		
	선택 (1개)									통신 이론	100점
										정보 관리론	100점

비고

-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헌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과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항공분야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항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 헌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과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죄학 일반 10% 내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u>경찰간부후보생</u>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 날	4. ----- <u>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u> -----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10조에 따른 <u>공개경쟁채용시험</u> , <u>경찰간부후보생</u>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u>공개경쟁채용시험</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② (생략) ③ <u>채용후보자</u>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용후보자</u> ----- -----. ④ <u>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u>	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순경</u>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u>제3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5조제1항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제36조제1항의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본다.</u>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u>경찰공무원</u> 채용시험에 응시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u>경위 및 순경</u> -----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u>경찰공무원의</u> -----
제35조(시험의 방법) ① (생략) ② <u>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u> ③ (생략)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 <u>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u>	제35조(시험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0조제2항제2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u>-----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 <u>경정, 경위</u> ----- -----		

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u>경찰공무원</u>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 -- . ----- ----- ----- -- <u>경찰공무원의</u> ----- -----.
②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삭 제>
③ <u>경찰공무원 채용시험</u> 및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 <u>채용시험</u> ----- ----- ----- ----- -----.
④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또는 <u>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u> 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u>경위</u>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필기시험) ① <u>경찰공무원</u>	제41조(필기시험) ①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u>같고</u> ,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으며</u> , <u>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u> 다만, <u>별표 2, 별표 3</u>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 ----- <u>같고</u> , ----- ----- ----- ----- ----- ----- ----- <u>별표 2</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42조(출제수준) <u>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제42조(출제수준) ----- ----- -----.
1. <u>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u> :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1. --- <u>이상</u>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생략)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 ----- -----.
1. <u>경찰공무원(순경은 제외)</u>	1. -----

다) <u>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u>공개경쟁채용시험</u> -----	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5년간 <u>경찰공무원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④ ----- <u>경찰공무원 채용시험</u> -----
제44조(응시수수료) ① <u>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응시수수료) ① <u>경찰공무원 채용시험</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천원</u>	<삭제>	① <u>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① ----- <u>채용시험</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u>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u> 의 출제, 채점, 면접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 <u>채용시험</u>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경찰공무원의 <u>채용시험</u> 또는 <u>경찰간부후보생</u> 공개경쟁선발 <u>시험</u>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 거나 무효로 한다.	② ----- <u>채용시험</u>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2832